

창원지방법원 2021. 11. 19 선고 2021나5419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안 담당변호사 정영덕

변 론 종 결 2021. 10. 22.

판 결 선 고 2021. 11. 19.

제1 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 2. 18. 선고 2020가단33304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 위 적 청 구 취 지

피고와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3 지분에 관한 2020. 1. 8.자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 취지

피고와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3 지분에 관한 2020. 1. 8.자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5,964,3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당사자적격 존부

1) 피고 주장의 요지

소외 유한회사가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면서 주채무자인 E에게 발송한 채권양도통지서는 E에 도달되지 않았고, 원고가 E 및 C을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 사건 소장에 양도통지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명백하지 않을 뿐더러 위 사건의 소장은 2020. 6. 5.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E 및 C에게 송달되었는바, 소외 유한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채권 양도에 관하여 채권양도통지 등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춰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어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먼저,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대위권과 달리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취소채권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취소채권자가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다음으로, 지명채권 양도의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므로 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려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사실이 통지되거나,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채권양도의 통지는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되면 되는 것이고, 채무자가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다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1281 판결).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판결 참조).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유한회사가 E를 상대로 한 의정부지방법원 2020카기508호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20. 9. 21. ‘소외 유한회사의 E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통지서를 공시송달 절차에 의하여 송달할 것을 허가한다’고 결정하였으며, 위 결정문과 채권양도통지서를 공시송달로 발송하여 2020. 10. 6. 0시에 E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는 2020. 10. 6. 채권양도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할 것이므로, E가 채권양도통지서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지 못하였다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E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는

이뤄졌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보증인인 C에 대하여 별도의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갖춰졌다.

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선의 여부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 C 및 I의 법정상속분액은 각 44,631,000원인데, C은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으로부터 7,200만 원(2013. 2. 6. 2,000만 원을 C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2017. 2. 10. 3,500만 원을 C의 자녀 J의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2018. 7. 21.부터 31.까지 현금 1,700만 원을 지급받음)을 사전증여 받았으므로(위 증여액 중 현금으로 지급받은 1,700만원을 제외하더라도 사전증여액은 5,500만 원이다), C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액 44,631,000원을 초과한 초과 특별수익자에 해당하여 구체적 상속분이 0에 해당하므로 결국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지분을 갖지 못한다.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1/3 지분이 C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약이 C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C의 채무관계나 재정상태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C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이다.

2) 판단

가) 망인이 C에게 2018. 7. 21.부터 31.까지 현금 1,700만 원을 증여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송금인이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계좌명의인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당사자들 사이의 의사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금전을 송금한 것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망인이 2013. 2. 6. 2,000만 원을 C의 계좌로 송금하고 2017. 2. 10. 3,500만 원을 C의 자녀 J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C에게 위 각 금원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C이 초과 특별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수익자인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C의 사해행위에 관하여 선의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양상익, 판사 전보경, 판사 김희수